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8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조미선 의원 발의)

#### 1. 제안이유

-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통과 참여 기회를 높이고,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자 함

#### 2. 주요골자

-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 조정(안 제2조제1호)

#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3년 9월 4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447-701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31, · 팩 스 : 031)3036-8953
  -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오산시 조례 제 호

##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본문 중 “39세”를 “45세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<u>39세</u>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----- <u>45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